



長錦商船株式會社

Sinokor Merchant Marine Co., Ltd.



http://www.sinokor.co.kr TEL:(02)6496-7756 / FAX:(02)319-0550

수 신 : 화주 제위

2014년 06월 20일

발 신 : 장금상선 주식회사

제 목 : 상해 세관 사전신고제도 본격 시행 안내의건(2014/06/28 출항 부터)

1. 그 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,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상해 수입화물 관련규정 (172호) 에 따라 사전제출제도의 시범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며 2014년 6월 28일 출항 모선부터 상해 사전제출 제도 본격 시행됨을 통지 드리오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귀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- 하 기 --

- 시행구간 : 상해 입항되는 모든 수입화물
 - 시행시기 : 2014년 06월 28일 출항 기준 본격 시행
 - 주요 목적: 본선 적재 24시간전에 상해세관에 목록 전송하여 적재 전에 상해 세관의 선적여부 승인 완료 후 선적 진행 가능
- 1) 목록 전송 시기 : 모든 선적지 에서 선적 24시간 전에 상해 세관으로 EDI 를 전송완료 해야 합니다.
 - 모든 선적 화물에 대하여 상해 세관의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적 허가 득한후 선적가능
 - 2) 수출 적화목록 상의 모든 수출 품목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.
 - ATTACHED RIDER 는 신고 불가능합니다.(B/L 표기는 가능/신고는 불가능)
 - 모든 선적품명은 DESCRIPTION / MAIN ITEM 란에 명기되어야 합니다
 - MAIN ITEM 에 명기된 품명은 B/L DESCRIPTION 에도 명기되어야 하며 DESCRIPTION 제일 앞줄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MAIN ITEM 에는 약어,제품 품번,부호 표기 만 명기 되는 것은 불허합니다.
 - 3) CNEE : To order 일경우 가능한 To order of XXX company 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To order 일 경우 NOTIFY 는 반드시 상호 /연락처 / 담당자가 명확하게 기입되어야 합니다.
 - 4) 제도 시행 이후 상해 도착화물에 대한 B/L 분할 불가 합니다
 - B/L 분할은 선적 전에 완료 되어야 함
 - 5) 중국 국내 T/S 화물(상해 기준) 의 화물에 대한 변경은 엄격히 제재되오며 변경시 정정 거절 될수 있습니다.
 - 6) 위험물 - 위험물 과 일반 화물 개별 CNTR 로 작업시 비엘 한건으로 신고 불가능합니다
(반드시 위험물컨테이너 / 일반화물 컨테이너 각각 비엘 진행해야 합니다)
-위험물 과 일반화물 혼적 시에는 비엘 한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
 - 7) 모선별 마감시간 : 기존 보다 1.5~2일가량 앞당겨져 진행될 예정입니다.
-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2014년 6월28일 출항 기준 부터 AFS(Advanced Filing Surcharge) & AFA(Advance Filing Amendment Fee) 비용 수취 예정입니다.
 - AFS(Advanced Filing Surcharge) : USD 30/BL
 - AFA(Advance Filing Amendment Fee) : USD 40/BL

3. 추가 변동사항 발생시 재 통지 드리겠습니다.

4. 감사합니다.